

연구사업 관리 규정

개정 2024. 10. 08
개정 2024. 03. 28
개정 2022. 03. 22
개정 2020. 11. 17
개정 2020. 09. 28
개정 2018. 01. 23
개정 2014. 05. 08
개정 2009. 11. 12
제정 2004. 04. 16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 시행세칙 제5조와 제6조에 의거하여 본 학회에서 수행하는 학술자료의 조사, 수집 및 번역, 자문 및 연구용역(이하 연구사업이라 한다)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본 규정은 본 학회에서 수행하는 모든 연구사업에 적용한다.

②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보조기관 등 예산회계관계적용 또는 준용을 받는 연구사업에 관하여는 본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의 관련 조항을 우선 적용한다.

제3조(연구사업 추진 및 계약체결) ① 본 학회 정회원은 누구나 본 학회와 관련된 연구사업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였을 경우, 입수한 정보를 기술정책연구소장에게 제공하고 사업추진을 건의할 수 있다.

② 기술정책연구소장 또는 회장은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의 수행 요청이 있는 경우, 연구사업책임자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회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을 체결하며, 해당 연구사업의 계약 추진 경위 및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실행예산 및 연구사업비의 집행) ① 연구사업책임자는 연구사업이 확정되면, 실행예산(안)을 편성하여 회장 및 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실행예산 편성시 총 사업비의 최소 20%를 간접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단, 정식 계약체결 전 용역 연구사업 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 소요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간접경비의 5% 이내에서 기술정책연구소장과의 협의하에 운영비를 지급 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② 연구사업비는 실행예산으로 승인된 범위내에서 연구사업책임자가 책임 집행하며, 비목별 금액의 20% 이상의 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회장과 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연구사업 계약 시 연구사업비의 집행 결과 처리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연구사업책임자가 책임지고 이를 처리한다.

④ 연구사업책임자는 연구사업비의 예정가격 산출 및 집행시 인건비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학술연구용역 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본 학회 규정으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여비, 원고료 및 강사료, 회의비 및 연구수당 등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회원의 근무지가 사무국의 소재지(대전)와 다를 경우, 참여 인력의 소속기관 소재지 또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보고서 등의 제출) ① 연구사업책임자는 계약에 정한 기한 내에 관련 보고서를 기술정책연구소장과 회장의 승인을 얻어 위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보고서는 위탁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추인 동의를 통한 선 제출 후 승인도 가능하다.

② 제1항과는 별도로 연구사업 계약시 발주기관에서 보안을 요구할 경우, 회장의 결정하에 이사회의 동의 절차 없이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연구사업비의 잔액처리) 연구사업책임자는 연구사업이 종료된 후에 실행예산 중 잔액이 있으면 학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단, 해당 연구사업의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사업 종료 2개월 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세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세부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4년 4월 16일 부터 시행한다. 그 이전에 시행한 것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본 규정은 2009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4년 5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된 규정 제3조는 2018년 1월 23일부터 시행하되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

본 개정된 규정은 2020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된 규정은 2020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된 규정은 2022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된 규정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된 규정 제4조는 2024년 10월 8일부터 시행하되 7월 1일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